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후보자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자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자

1) 후보자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 왜 개최해야 하나?

6·1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농업경영인 출신 출마자들이 최대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농연이 중점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을 때, 농업에 대한 철학과 이것들을 실현시킬만한 의지 및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시나 군, 도의 농정을 펼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이들 단체장들이 어떠한 농정철학과 정책방향·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는 향후 4년간 지방농정을 예상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한농연은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업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알리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정공약을 관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라는 국면을 통해서 농업인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각 후보자들도 이러한 농정공약을 받아 안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농정에 대한 참여 공간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중심이 되는 공명선거 분위기의 조성에 일조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효율적인 농정공약 토론회 개최 순서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토론회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예시이고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시·군연합회는 지역농정 관련 질문을 준비한다. 만약 타 단체와 공동개최라면,

◎ 제1부 개회식

구 분	시 간 예 시	내 용
개 회 선 언	13:00~13:05	토론회의 정식명칭과 주제를 포함시켜 시작을 알림
국 민 의 례	13:05~13:10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참석자 소개	13:10~13:15	참석자의 성격별로 주요 인사를 소개
활 동 보 고	13:15~13:20	한농연 지자제공명선거대책위원회 활동보고
인 사 말	13:20~13:25	주최, 주관측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공동주최일 경우 공동주최자가 각기 인사말을 함
축 사	13:25~13:30	주요 단체로부터 축사

◎ 제2부 시장(군수)후보자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구 분	시 간 예 시	내 용
농정공약 발표	13:30~13:50	각 후보자 농정공약 발표(후보자당 5분씩)
후보자별 토론	13:50~15:50	본 토론순서 진행(6개 질문에 대해 각 20분씩 진행)
최 종 발 언	15:50~16:05	후보자 최후 발언(후보자당 3분씩)
종 합 토 론	16:05~15:35	청중 자유질의 / 해당 후보자 답변
결론 및 정리	16:35~16:40	사회자의 토론회 평가, 마무리 발언(내실있는 지역농정 공약 수립과 공명선거 촉구. 한농연의 공명선거운동 지속 다짐)
폐 회 선 언	16:40	폐회선언

◎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 관련 주요 참고 사항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때 한농연 명의의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한농연 지자제 공명선거대책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인사말, 축사 등에 농정관련 공약 사항을 삽입하고 이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은 가능하다.

또한, 청중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며, 청중 질의시간을 잘 활용하여 농정공약에 대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시·군연합회에서는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토론회에 관련된 예정사항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에 정리하고 최종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각 질문은 사회자가 직접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각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대해 2분간 답변을 한다. 2분 답변이 끝나고, 후보자별로 다시 한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자는 토론회 기획

단계와 본 토론 진행 직전에 후보자들에게 질문·응답에 관련된 규정된 토론시간과 토론규칙, 벌칙 조항에 대해 숙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시·군연합회 사무국은 토론회의 규칙에 대해 자료집과 안내전단, 본 토론회 직전 사회자의 안내발언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한농연이 요구하는 주요 농정공약

한농연중앙연합회는 5월 24일, 지방선거 관련 주요 14대 농정과제를 발표함으로써 현 시기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농림부장관 부총리 격상

- 농업·농촌 문제는 더 이상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타부서와 정책·행정적인 조율과 협조가 관건임

2.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현재 농어촌의 노령화, 이농의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교육·의료·서비스 등 생활환경의 도농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농어민 종합병원 설립, 농어촌복지공단 및 농림부 전담국 설치,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한농연이 제기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학계나 정부,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공히 공감하고 있음

3. 농협법 개정 및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요구사항

-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시군지부 폐지, 조합장선출제도 개선 등 농협법의 개정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조치 강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지원 및 육성 등을 요구

4. 농가부채 후속대책 마련

-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내용으로 정책자금 금리(5%→1%), 상호금융 금리(6.5%→3%), 연대보증 피해자금 금리(5%→1%) 등의 인하를 촉구하였고,
- 국회 내 농가부채후속대책위원회 설립과 부채총액이 심각한 농가를 위해 경영회생에 초점을 맞춘 후속대책의 수립 등을 촉구

5. 장 단기 쌀산업안정대책 마련 촉구

- 2004년 쌀 재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와 MMA방식 반드시 관철, 농업·농촌기본법 상 식량자급 목표 및 자급계획 명시, 2002년 이후 농가 실질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보전, 논농업직불제의 선진국 수준 인상, 쌀소득안 정기금 신설

6. 방역업무 일원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

- 수의방역 인력이 대거 축소되어, 돼지콜레라나 구제역 등 늘어나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동식물검역 및 질병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집중적인 방역청을 조속히 신설하여 가축 질병에 체계적인 방역 및 연구활동 등을 총괄하고, 전국 단위 가축질병 방역 및 예찰 기능을 수행해야 함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반대

- 농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한·칠레 FTA를 반대하며, 향후 추진될 FTA의 경우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8.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우리나라는 영세한 농업생산구조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업으로 얻는 수익률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
- △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등 정책자금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 △ 지방자치체의 농업지원자금 활성화

9. 농가소득보장정책 확대

-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생산중립적 직불제 확대, 밭농업직불제의 조기 도입 및 지원규모 현실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보장제도 도입 및 시행

10. 농업부문 예산 확충

- 선진국은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연차적인 법개정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림예산 9조2594억원은 전체예산 111조9767억원의 8%에 불과함
- 농림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 편성하고, 농특세 기한 연장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II. 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처리

- 학교급식법의 연내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검

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위주인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높은 질을 보유한 국내농산물로 공급하도록 해야함

12. WTO협상 대책 마련

-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관세와 보조금의 수준이 더욱 낮아져 UR이후 보다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관철하고, 국내농업 특성을 반영한 WTO협상 양허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WTO 대책을 수립할 “농업부문 협상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국제통상기금제도를 도입하여 통상이익을 얻는 부문에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13.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한해 농산물수입액 100억불의 관세수입인 6조5000억원(2000년 기준)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 생산면적 및 목표가격 결정을 위한 “품목별 생산 및 가격조정위원회” 설치
- 품목별 생산비 보장 방안 강구

14. 현실적인 농업재해대책 마련

-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의무이며,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함
-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80%까지 올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